

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목제명 “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”을 “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(학교법인한국폴리텍)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고용노동부 소관 <u>비상대비자원 관리법</u> 시행규칙	고용노동부 소관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</u> 시행규칙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 <u>비상대 비자원 관리법</u> 」 및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 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비상대 비에 관한 법률</u> 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자원조사) 「 <u>비상대비자원 관리법</u>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제3조에 따 른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.	제2조(자원조사) 「 <u>비상대비에 관 한 법률</u> 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)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중 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<u>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</u>」 에 따른 기능대학(학교법인 <u>한국폴리텍</u>)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---	--